

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출월일 : 1995. 10.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호적법시행규칙 개정 (대법원규칙 제1369호, '95. 6. 5) 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.

2. 법적근거

○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

3. 주요골자

○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

해태기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월 미만	10,000원	20,000원
1월 이상 3월 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 이상 6월 미만	30,000원	6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4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5.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'95. 8. 5 ~ 8. 25

○ 예고방법 : 월간신문 및 시, 읍·면·동 게시판 게시공고

○ 접수된 의견 : 없음.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〔별표2〕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 부과기준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월 미만	10,000원	20,000원
1월 이상 3월 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 이상 6월 미만	30,000원	6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